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도개선)

□ 민원 제목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에 대하여

□ 신청 원인

- 경기도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인증서)되는 한, 인증 유효기간이내에는 언제라도 의료비 할인혜택 소급 적용 필요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매년 약 20만명이 넘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50여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의료비 할인혜택을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와 의료기관과의 협약은 혜택을 위한 협약으로써 협약 체결의 근거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를 원할 경우는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에도 불구하고 해지일이 속한 인증기간에는 할인혜택이 유효한 것으로 함
- 협약서에는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서 등 자격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 및 인증서에도 인증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성실납세자(인증서 유효기간 : '24. 3. 1. ~ '25. 2. 28.)로서, '24년 7~8월 ○○의 ○○○○○○ 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 후 10월에 통원치료를 받던 중, 경기도 성실납세자들은 경기

도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됨

- 이에 신청인은 해당병원 원무과에 입원비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병원 측은 내규에 의해 인증서를 입원 시 제출하거나 퇴원 후 2일 이내 제출한 경우에 의료비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함
- 신청인은 성실납세자 인증 유효기간 내에는 의료비 할인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함(24. 10. 15.)

□ 관계법령 등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경기도_○○○○○ ○○ 병원(○○) 협의문
 - 지원대상 : 매년 선정하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 지원내용 : 종합검진비 20% 할인, 입원진료비 비급여 10% 할
 - 지원기간 : 매년 선정일부터 1년간
 - 기 타 :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자를 증명하는 인증서(전자 이미지 포함) 등 증명자료를 납세자 본인이 제시
 - 3) 2024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안내문
 - 귀하는 2024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혜택 기간 : 2024. 3. 1. ~ 2025. 2. 28.(1년)

해당 기관에 직접 발급받으신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판단 및 결론

- ○ ○ ○ ○ ○ ○ 병원의 경우는 종합검진비 10% 할인 또는 입원 진료비 비급여 20% 할인혜택(중복할인 불가)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와 ○ ○ ○ ○ ○ ○ 병원의 협약서(협의문)를 보면 '성실납세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납세자 본인이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받은 사전 안내문에도 '인증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 사안에서 신청인이 적시에 인증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내규에 따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병원의 입장 및 피신청인의 답변에 대한 위법·부당의 요소는 없음
- 협약서에 없는 의료기관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경기도가 민간의료기관에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만약 그러한 강요가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은 협약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개연성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이 입게 되어서,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 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임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경기도 세정과)은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추후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시 의료비 할인혜택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실납세자 선정 안내문에 의료비 할인혜택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해당 의료기관 내규에 따른다는 내용 명시 및 성실납세자 지원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사방사업 재개 요구

□ 신청 원인

- 신청인은 여주시 산북면 소재 사찰 주지로, 해당 사찰은 과거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었으며, 사찰 상부 임도 및 배수로 설치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여주시는 해당 일원을 2025년 사방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사유지 소유주의 부동의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통보한 상황임
- 신청인은 산사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한 재해임에도 사업이 중단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사방사업 재개를 요청하고 있음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여주시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사방지’ 및 ‘산사태취약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호우피해 복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일부 사면 토사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계류 보전 보수를 위해 산주와 사방사업 동의를 지속 협의 중이나, 산주가 매매 진행을 이유로 부동의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 산주 동의 확보를 위해 유선 연락 및 우편 발송 등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산주는 매각 진행 중을 사유로 부동의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산림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산주 변경 시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사실관계

- 신청인이 거주하는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일원은 양자산 등성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4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음
- 여주시는 당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2014년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 설치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일부 돌망태 하부에서 침하가 발생하는 등 시설 노후화가 확인되어 보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을 철거 후 메쌓기 방식으로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가 매각 예정임을 이유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신청인은 산주 부동의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함

□ 관계법령 등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및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 「사방사업법」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및 제10조(손실보상 등)

□ 판단 및 결론

- 기상청은 2025년 6월 장마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해당 신청지는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아니나, 포함된 산북면 명

품리 일대는 2022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2014년 시행된 호우피해 복구시설에 대해 여주시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노후화 및 보수 필요성이 확인됨

- 신청인은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유지를 점유·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유자 동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 해당 지역은 현재 사방지 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을 거쳐 사방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 주변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산○○-○○ 일원의 토지 소유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복구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 예방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여주시는 해당 지역에 산사태 예방 순찰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또는 사방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함